

## < 대한민국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

### 1.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 대한민국 관세법 제235조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이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식재산권자는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통관단계에서 심사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관세국경에서 이러한 단속활동은 수출입신고물품 뿐만 아니라,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의 신고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지재권 침해물품은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에서 직권으로 통관보류 하게 되며, 일정한 수량과 금액 이상일 경우 고려하여 조사의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침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권리자의 감정결과를 참고하여 통관보류여부를 결정하며,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보류를 하는 경우 권리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권리자가 통관예정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출입자, 입출항 경로, 상세품명 등 침해물품의 통관예정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 권리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통관예정지 세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자의 침해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통관단계에서 해당화물이 검사선별이 되도록 C/S\* 등록관리를 하게 됩니다.

\* Cargo Selectivity : 우범화물 검사 선별

## 2. 지식재산권 신고제도

○ (개요) 통관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식 재산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를 세관에 공유 함으로써 침해물품이나 침해우려업체들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한 제도

※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재권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유관협회\*에 지식재산권 신고접수 및 등록업무를 위탁

\*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 (등록대상 지재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

○ (신고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우편 및 방문 신청(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본부세관 별관 2층 TIPA 지재권신고센터)

- 온라인 신청(<https://unipass.customs.go.kr>)

○ (효력발생일) 신고등록일로부터 즉시 효력발생

○ (유효기간) 3년

※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3년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갱신신청)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0일전 까지
- (등록비용) 무료
- (제출서류) 권리신고서, 권리관계 확인서류, 침해물품 식별자료(카달로그 및 설명자료), 우범수출입자\* 등 침해관련 자료, 위  
 입장(대리신고의 경우)

\* 특허권, 품종보호권, 디자인권의 경우 필수 제출

□ 신고된 지식재산권 정보의 활용

(1) 특정 정보

: 침해가능 수출입자의 상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C/S 등록여부 검토 ⇒ 통관단계에서 적극적인 검사 선별

(2) 일반 정보

: 브랜드별 품목별 침해식별자료를 통한 세관직원 정보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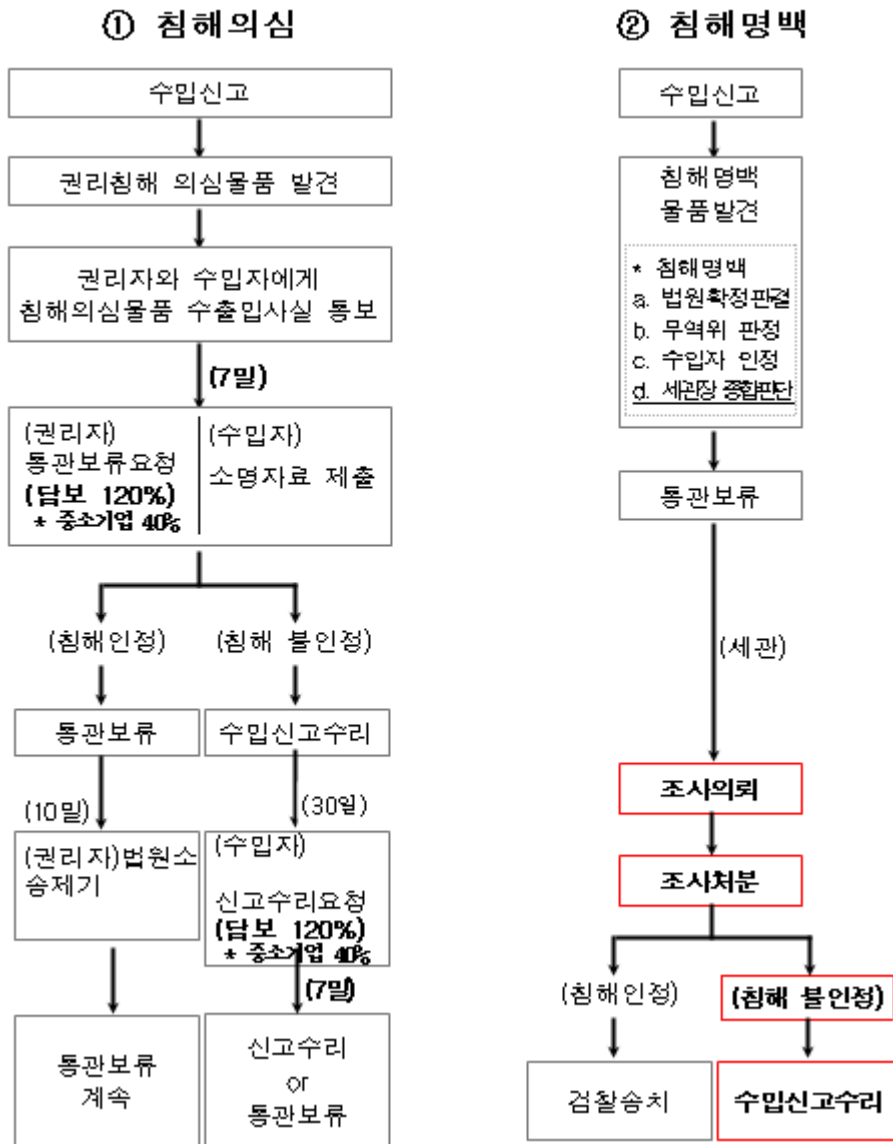
### 3.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제도

- (국경조치 대상 지재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품

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

- (국경조치 범위) 수출입신고된 물품,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일시양륙 신고된 물품

○ 통관단계 세관 지재권 보호 절차



- (침해가 명백한 경우) 수출입통관단계에서 침해물품 확인

시, 침해가 명백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조치

① 직권 통관보류\* 후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통관보류 사실 통보

\* 담보제공 不要

② 통관부서에서는 상표법등 법령위반 혐의로 조사부서에 송치의뢰

※ 권리자 감정서 등 침해사실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송치의뢰

③ 조사 결과에 따라 침해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상표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수출입통관단계에서 침해물품 확인시,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조치

①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 사실 통보

② 통보받은 권리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관보류

요청, 권리자도 수출입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침해가 아  
니

라는 소명자료 제출

※ 통관보류 요청시 담보제공(과세가격의 120%\*)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과세가격의 40%에 해당하

는 담보 제공

③ 통관보류 후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에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통관보류가 지속되며, 이후 양자 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

○ 권리자로부터 침해여부 확인 방법

-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의심물품 정보를 IPIMS\* 시스템을 통해 권리자에게 전송하여 권리자의 실시간 감정 가능('09년~)

\* IPIMS(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지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 권리자가 7일 이내에 감정회신 할 수 있도록 수출입사실 통보시 SMS 등으로 권리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세관에서는 권리자에게 수출입사실 통보를 하고 권리자는 세관에 IPIMS를 통하여 감정회신을 함

